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한국판뉴딜
지역균형뉴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 사항 및 유권해석사례 통보

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705호(2021.4.15.)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발주기관의 원활한 공사 발주를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21.4.15. 개정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에서 자치단체에서 발주 시 숙지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 및 최근 유권해석 사례를 붙임과 같이 전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시ㆍ군ㆍ구, 교육지원청,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알림(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
3. 전문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질의 회신(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무과장), 부산광역시장(회계재산담당관), 대구광역시장(회계과장), 인천광역시장(회계담당관), 광주광역시장(회계과장), 대전광역시장(회계과장), 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운영지원과장), 경기도지사(회계과장), 강원도지사(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운영지원과장), 전라북도지사(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회계과장), 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부산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회계정보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재정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복지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재정과장), 울산광역시교육감(재정복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운영지원과장), 경기도교육감(재무기획관), 강원도교육감(행정과장), 충청북도교육감(재무과장), 충청남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북도교육감(재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재정과장), 경상북도교육감(재무정보과장), 경상남도교육감(재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재정과장)

전문임기제 나급 **예병찬**   서기관 **최교신**   회계제도과장 전결 2021. 4. 21. **김경태**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1601 (2021. 4. 22.) 접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782 팩스번호 044-204-8967 / ybchanya95@mail.go.kr / 대국민 공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 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 및 등록기준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21.4.15일자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전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인

수신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세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림청장, 조달청장, 문화재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국토지리정보원장, 항공교통본부장,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주무관 김국남 시설사무관 하철호 공정건설추진팀장 전결 2021. 4. 15. 박진홍

협조자

시행 공정건설추진팀-705 접수 회계제도과-1531 (2021. 4. 15.)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11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497 팩스번호 044-201-5548 / t6342@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국토교통부

힘내라 대한민국

수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경유)
제목 질의회신(전문공사의 입찰참가자격)

1. 전건협 건설정책 제381호(2021.2.26)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 질의 내용

ㅇ 건설공사 발주시 시공기술의 특성, 시공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정밀시공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발주자 판단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 도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 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발주자가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 공고문에 기재하여 전문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박준식 행정사무관 전결 2021. 2. 26. 김석원

협조자

시행 건설정책과-1076 (2021. 2. 26.)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515 팩스번호 044-201-5546 / mjjs98@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